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289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고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론 종결2021. 5. 26.

판결 선고2021. 6.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86,804,128원 및 그 중 380,042,568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70,520,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5. 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는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별지 '청구원인' 관련 구상금으로 386,804,128원 및 그 중 원금인 380,042,568원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8.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관련 구상금으로 470,520,69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6. 4.부터 지급일 기준 30일이 되는 2020. 7.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21. 5.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E은 먼저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 부분 보증보험 계약은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2018. 12. 4. 체결한 G(BD #4, 5, 6)(이하 'BD #4, 5, 6'이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것인데, F가 원고에게 청구한 보험금은 이와 별개로 2019. 7. 17. 체결된 G(BD #2)(이하 'BD #2'이라 한다) 납품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증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는 당초 BD #2에 대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D #4, 5, 6에 대해서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E은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별약관인 청구보증 중 제2조(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의 책임)1) 부분을 자신에게 명시·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2. 1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E이 주장하는 청구보증 특별약관에 대하여 따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차영민

별지

1) 제2조는 아래와 같다.

- 제2조(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의 책임) ①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판단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이행해야 할 채무 또는 주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유로도 보험금 지급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 ③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사전통지를 요하지 않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산정 등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본인과 보증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Article 2(Responsibility of Principal and Indemnitor(s)) ① Th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ground to indemnify a loss exists in relation to a claim made by a Beneficiary shall be made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Company and the Principal and Indemnitor(s) shall have no rights to object to such determination made by the Company.

② In the event that the Company makes a payment of indemnity proceed's, the Principal

and Indemnitor(s) shall not have any rights to dispute the effectiveness of the payment for any reasons related to the contract specified in the Bond (the "Underlying Contract") or any obligations owed by the Principal to the Beneficiary under such Underlying Contract.

③ The payment of any indemnity proceeds by the Company shall not require any prior notification to the Principal and Indemnitor(s), and the method of payment and the calculation of the payment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any in a manner that the Company deems appropriate, and the Principal and Indemnitor(s)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s to such decisions of the Company.